

#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「SOS 장학금 신규장학생」선발 공고

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중·고등학생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「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」을 아래와 같이 선발·지원하고자 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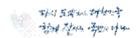
2024. 9. 4.(수)

#### 한국장학재단 이사장

## Ⅰ 선발 개요

- □ (사업명)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금
  - ※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긴급위기 학생을 선발·지원(10개월 한시 지원)
- □ (사업목적) 재난·재해·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·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
- □ (선발규모) 총 1,500명
  - 학제·학년별 선발(중1, 중2~3, 고) 인원은 학제·학년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(학교별 추천인원 제한 없음)
- □ (지원내용) 선발 후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
  - o 지원기간: '24.9월~'25.6월(9월 지급분은 10월 장학금 지급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)
    - ※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(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)
    - ※ 마음건강(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·회복 지원) 프로그램 지원(~'24.11.20.)





## Ⅱ 선발 자격

### □ (신청 자격) 아래 요건을 충족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- 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(단.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자)
- ② 국내 중·고교 재학생(중1~고3)
- ※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**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**(상세 기준은 본 공고문 [붙임1](p.8) 참조)
- ③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
- 긴급구난사유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의 1항~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\*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(단, 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)

### 신청 자격

#### <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>

- ① 주소득자(主所得者)의 사망/가출/행방불명/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
-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
-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/유기(遺棄)/학대
- ④ 가정폭력/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
- ⑤ 거주지의 화재/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
-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/폐업/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
-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
- ※ 긴급구난사유 세부 기준은 본 공고문 [붙임2](p.9) 참조
- \*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: 긴급구난 세부사유 ①~⑦의 세부 기준\*을 충족하지 않으나, 가정의 경제상황 및 긴급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위 상황에 준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 판단 및 추천을 통해 결정된 경우

#### □ 신청 제외 대상(1개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)

- (사회적 물의)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\*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
- \* <sup>1</sup>정학·퇴학 등 징계받은 자, <sup>2</sup>형사처벌(처분)을 받은 자, <sup>3</sup>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제4~6호, 제8~9호에 해당하는 자
- · (중복신청) '24년 꿈·다문화 장학금 선발 시 중복신청 불가
- ·(기 수혜자)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, 재신청 불가



## Ⅲ 선발 절차

□ (선발방법) 학교추천(신청) 후 서류·심층평가를 통해 신규장학생 선발

1단계 학교추천	2단계 서류심사	3단계 심층평가 및 최종선발
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추천 (학교별신청 인원 제한 없음)	제출서류 확인·점검, <b>최소 자격요건 심사</b>	「SOS 장학금 신청서」 평가 (SOS 평가단) 및 최종 장학생 확정 ※ 장학생 선발·관리위원회 생략
'24. 9. 4. 9:00 ~ 9. 30. 18:00	'24. 10월 1주~10월 2주	'24. 10월 3주 ~ 10월 4주

- ※ 학교 폭력 가해 이력 외 소득·성적·출결·봉사 등 모든 자격 심사 제외
- 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- □ (선발결과 안내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('24. 10월 말 예정)
  - ㅇ 결과 발표 시 신청 교사와 학생 본인에게 문자 안내 예정

## **Ⅳ** 신청기간·방법 및 제출서류

- □ (신청기간) '24. 9. 4.(수) ~ '24. 9. 30.(월) 18시까지
- 【신청방법】 ●제출 서류는 신청 학생이 준비해야 하며, 장학금 신청 및
   서류 제출은 ●소속 학교의 신청 담당 교사\*가 온라인 제출
   \*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, 장학 담당교사, 학교 복지사 등
  - 1 신청 학생은 서류를 작성·준비하여 담당 교사에게 제출
    - ☆ (필독)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, 만 14세 미만 학생(10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)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 필수 ☞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카드발급 불가 ※ 법정대리인 범위: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
  - ② 신청 담당 교사는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(https://eduman.kosaf.go.kr)에 접속하여 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접수·제출



#### - <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> -



-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(https://eduman.kosaf.go.kr)
-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→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
- ❸ 입력된 정보 확인 후,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
- ※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 <u>교육부 전자서명인증(EPKI)이 필요</u>하며, 사용자 권한 승인까지 일정 시간(통상 1~3일)이 소요되므로 <u>사전 준비 필요</u>
- ※ 학자금지원시스템 설치 및 접속 방법은 [온라인 신청 매뉴얼] 참고
- □ (제출서류) 담당 교사가 온라인(학자금지원시스템)으로 제출

☆(필독) 작성일자 및 서명 누락, 학교장 직인 누락 등 <u>제출서류 미비 시 심층평가</u> 대상에서 제외(즉시 탈락)되므로, 반드시 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제출

- (신청자 전원 제출) ①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,
   ② SOS 장학금 신청서 표지, ③ SOS 장학금 신청서\*
  - \* 신청 학제·학년별(중1, 중2~3, 고) 장학금 신청서 서식[서식11~13]이 다름에 유의
  - ※ 진단서, 폐업증명서 등 **긴급구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음** 〈 신청자 전원 제출 필요 서류〉

구분	제출서류	세부내용	비고
1	신청인 기본정보	학생 기본정보( <u>시스템 입력사항, <b>제출 불필요</b></u> )	서식1
2	〈학생〉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 ※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	서식2
3	SOS 장학금 신청서(표지)	학생 기본정보 및 유의사항 확인 등 ※ 신청 시 소속 학교의 <u>학교장 추천·직인 필수</u>	서식10
4	SOS 장학금 신청서(본문)	학업 의지 · 계획 및 긴급 위기 상황 등 구체적 서술 ※ 1~3번 문항 ☞ 학생 작성(보호자 대리작성 불가) ※ 4번 문항 ☞ 학생의 보호자(교사, 부모 등) 작성	서식 11~13

- (만 14세 미만 학생에 한함) 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
   ② 학생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
  - ※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('10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)에 해당 하는 경우 <mark>[서식2]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</mark>
  - ※ <u>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(9.4.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</u>되며,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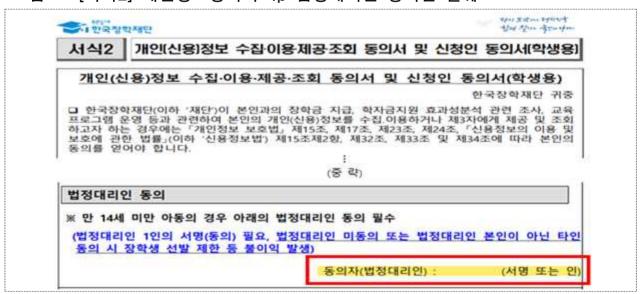
## ♡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

- □ (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) 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 ('10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)일 경우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장학생 선발 및 카드 발급 불가
  - (제출서류) 법정대리인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2종(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② 학생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)
  - (동의방법) [서식2] <학생>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동의서 4p, '법정대리인 동의'란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

〈 만 14세 미만 학생의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〉

구분	동의(서명) 방법	
양부모 가정	• 부모 중 1인 서명	
한부모 가정	<ul> <li>(이혼) 친권 보유 부모 서명(학생 본인 기본증명서(상세)에 기재)</li> <li>- 단독친권일 경우 → 친권자(부 또는 모) 1인 서명</li> <li>- 공동친권일 경우 → <u>친권자(부모) 2인 서명</u></li> <li>(사망) 생존한 부모 1인 서명</li> </ul>	
<b>기타</b> (보호시설아동, 조손가정 등)	• 미성년후견인* 서명 *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에 기재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	

- 후견인으로 별도 지정되지 않은 조손가정의 조부 또는 조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님에 유의
- 보호시설 입소 또는 조손가정의 학생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 또는 모가 기재되어 있으며 후견인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면, 친권 보유자인 부 또는 모 서명이 필요
- ※ 참고: 「서식2」 개인정보동의서 4p 법정대리인 동의란 발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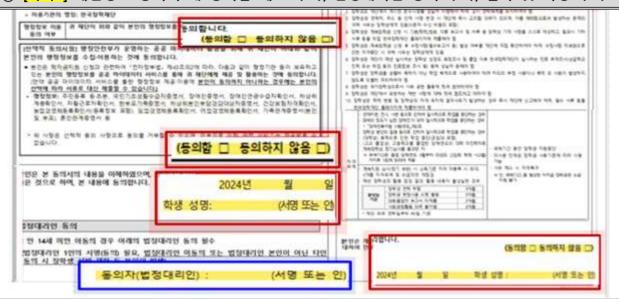




□ (서류제출 전 확인) 자필서명 및 작성일자 누락, 학교장 직인 누락 등 제출서류 미비 시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(즉시 탈락)되므로 유의

〈서류심사 탈락 주요 사례 〉

#### ① [서식2] 개인정보 동의서 내 동의함 체크 누락, 법정대리인 동의 누락, 일자 및 서명 누락



#### ② [서식10] SOS장학금 신청서(표지) 체크항목 누락, 학교장 직인 및 작성일자 누락

	지 원 자 격	
	① 주소득자(主所得書)의 사망/가큼/행명불병/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설 🗌	
	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절병 및 부상 □	
긴급구난 세부사유	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/유기/학대 🗌	
예당 항목	④ 가정목에/성목에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□	
택1 하여 ② 표시)	S 기주시의 화제/제태로 기주지 생활 근단 🗌	
E ()	⑥ 주소득자 혹은 무소득水(副所得謝)의 휴업/배업/사업장화계로 영업 곤란	
	② 주소득자 혹은 무소득자의 설적으로 인한 소득 상설	
사회적 문의	해당 학생에게 사회적 물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함 🗌	
이어 여부	<ul> <li>학교폭력 가해 이덕 영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물 일으킨 학생은 추천 불가</li> </ul>	
암	위 학생은 2024년 복권가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무처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SOS장학금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 2024 년 월 일	
	e e e	
	학교장(직인)	

#### ③ [서식11~13] SOS장학금 신청서(본문) 3쪽 이상 작성

### 서식11 중학교 1학년용 \_ (SOS 장학금) SOS 장학금 신청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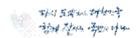
-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
- ※ 소속 학교명 및 학생 이름 등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람 (위반 시 감점과 탈락 사유가 됨)
- ※ 평가위원의 가독성을 위하여 계획서는 컴퓨터(한글 HWP)로 작성을 권고(불가시 자필 작성도 가능)
- 1-1. [학생 본인 작성]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.





### □ 기타 안내사항

- o (부정청구 제재) 장학금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ㅇ (상세내용) 장학금 신청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  - 장학금 > 국가우수장학금 >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
- ㅇ (문의처)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290
  - (개별문의) 재단 홈페이지 > 고객센터 > 질문있어요(온라인상담)





# 붙임1

#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학교 범위

설기	치근거법	대분류	중분류	대상
		초등학교		X
		중학교		0
		고등공민학교		0
			일반고	0
초중등교육법			특수목적고* * 과고, 외고, 마이스터고 등	0
		고등학교	특성화고* * 공고, 상고, 대안교육 특성화고, 군특성화고 등	0
			자율고 <sup>*</sup> * 자사고 등	0
		고등기술학교	고등기술학교	0
		특수학교	장애인학교	0
		<b>ル</b> あむコ	외국인학교	0
		각종학교	대안학교	0
영재고	교육진흥법	영재학교	영재학교 <sup>*</sup> * 대구과고, 경기과고 등	0
 대안교육기관법		대안교육기관	비인가대안학교	X
외국 교육	경제자유 구역법	외국교육기관	(제주 지역 외) 인가된 국제학교* * 대구국제학교, 채드윅송도국제학교, 칼빈매니토국제학교	X
	제주특별법	국제학교	(제주 지역 내) 인가된 국제학교* *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, 노스런던컬리지 에잇스쿨 제주, 브랭섬 홀 아시아, 세인트 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	X
		비인가 국제학교	비인가 국제학교	X
재외=	국민교육법	재외 한국학교	재외 한국학교* * 재외동포 대상 초중등교육 기관	X
보호소년법		소년원학교	소년원학교* * 소년원 내 초중등교육 기관	X
평성	생교육법	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	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	X
공군항공과학 고등학교 설치법		공군항공과학고	공군항공과학고* * 공군부사관 양성 목적	X
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		해양 학교	해사고등학교 <sup>*</sup> * 선원 양성 목적	0





#### 붙임2

# SOS 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

긴급구난사유	세부 기준
① 주소득자(主所得者)의 사망/ 가출/행방불명/구금시설수용 으로 인한 소득 상실	• 가출 및 행방불명  -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-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·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• 구금시설 :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
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	·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-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, 암질환, 희귀난치질환 포함
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/유기/학대	• 아동학대(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)  -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
④ 가정폭력/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	• 가정폭력 :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⑤ 거주지의 화재 /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	·화재 및 자연재해(풍수해 등 자연·사회 재난 포함)
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/폐업/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	• 휴업/폐업/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(신청일 기준)
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	·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(신청일 기준)

❖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의 1항~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 및 추천을 통해 신청(단, 신청일 기준 위기 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)